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9
----------	------

제출년월일 : 2004. . .

제출자 : 안산시장

□ 제안이유

- 사회적 환경변화에 알맞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토요일 휴무 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 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공무원의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함 (안 제3조의2 신설).
- 나.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시간을 달리 정하였던 것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일정하게 정함 (안 제13조).
- 다. 토요일에 공무원 전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 라. 연가일수를 축소 조정함 (안 제18조).
- 마. 토요일 동시휴무 및 출산에 따른 휴가일수 확대에 관한 경과규정 및 적용례를 정함 (안 부칙제2항, 제3항).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사전예고 : 해당없음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표준조례안(행정자치부)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중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를 “토요일휴무제”로 한다.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6일
1년이상 2년미만	9일
2년이상 3년미만	12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6년미만	20일
6년이상	21일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3일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토요일 동시휴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요일 동시휴무는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한다.
- ③(연가일수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총무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총무과장 윤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담당 한 상 철
	담당자 성명·전화	김 영 덕 (행정 21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설></u></p>	<p>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 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p> <p>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 휴무 제----- -----</p>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td>4</td></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td>7</td></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td>10</td></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td>13</td></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td>16</td></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td>19</td></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td>22</td></tr> <tr> <td>6년이상</td><td>23</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p>제18조(연가일수) ①----- -----</p>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td>3</td></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td>6</td></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td>9</td></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td>12</td></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td>14</td></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td>17</td></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td>20</td></tr> <tr> <td>6년이상</td><td>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p><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head> <tbody> <tr> <td>출산</td><td>배우자</td><td>1</td></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p><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대 상</th><th>일수</th></tr> </thead> <tbody> <tr> <td>출산</td><td>-----</td><td>3</td></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3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구분	대 상	일수																																			
출산	-----	3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39
----------	------

제안년월일 : 2004. 6. 22.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공무원의 비밀엄수조항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재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 하였으며,
-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연가일수는 당초 공무원 주5일 근무제의 당초취지와 맞지 않아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함(안제3조의2)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 까지로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 까지로 수정함(안제13조제1항)
- 공무원연가일수를 종전 연가일수와 동일하게 수정함(안제18조)
- 부칙에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2005년 7월 1일부터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는 경과 규정을 둠(부칙제3조)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8조 제1항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u>4</u>
6월이상 1년미만	<u>7</u>
1년이상 2년미만	<u>10</u>
2년이상 3년미만	<u>13</u>
3년이상 4년미만	<u>16</u>
4년이상 5년미만	<u>19</u>
5년이상 6년미만	<u>22</u>
6년이상	<u>23</u>

부칙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근무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 제1항규정은 2005년 6월 30 일까지 적용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u>제3조의2(비밀업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이</u> <u>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u> <u>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u> <u>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u></p> <p><u>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u></p> <p><u>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u> <u>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u> <u>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u> <u>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u> <u>수 있는 경우</u></p> <p><u>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u> <u>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u> <u>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u></p> <p><u>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u> <u>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u> <u>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u> <u>가 있는 경우</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원 안	수 정 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생 략)	②(원안과 같음)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td>3</td></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td>6</td></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td>9</td></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td>12</td></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td>14</td></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td>17</td></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td>20</td></tr> <tr> <td>6년이상</td><td>21</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table border="1"> <thead> <tr> <th>재직기간</th><th>연가일수</th></tr> </thead> <tbody> <tr> <td>3월이상 6월미만</td><td>4</td></tr> <tr> <td>6월이상 1년미만</td><td>7</td></tr> <tr> <td>1년이상 2년미만</td><td>10</td></tr> <tr> <td>2년이상 3년미만</td><td>13</td></tr> <tr> <td>3년이상 4년미만</td><td>16</td></tr> <tr> <td>4년이상 5년미만</td><td>19</td></tr> <tr> <td>5년이상 6년미만</td><td>22</td></tr> <tr> <td>6년이상</td><td>23</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부 척	부 척																																				
①(생략)	①(원안과 같음)																																				
②(생략)	②(원안과 같음)																																				
③(연가일수 축소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근무시간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규정은 2005년 6월30일까지 적용하며, 2005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